

의안번호	2205810
의 퇴 인	박선원의원
회 답 일	2025.2.14.
추계번호	24D64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보상금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조 7,520억 1,900만원, 2030년 2조 8,743억 5,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 5,725억 8,700만원(연평균 2조 7,145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폐지	859,220	863,250	865,648	866,240	864,840	4,319,198	863,840
6·25전몰군경유족 최고금액 보상금 지급	1,567,521	1,662,448	1,764,594	1,874,289	1,991,909	8,860,761	1,772,152
6·25전몰군경자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313,890	4,280	4,340	4,400	4,460	331,370	66,27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11,388	11,804	12,236	12,683	13,147	61,258	12,252
합계	2,752,019	2,541,782	2,646,818	2,757,612	2,874,356	13,572,587	2,714,51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유족 또는 가족 의 범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자녀의 배우자”를 추가함(제1항제2호)	의무규정
2	안 제12조 (보상금)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제한(25세 미만)을 폐지함(제2항 삭제)	의무규정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게 최고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제6항 신설)	의무규정
		6·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16조의 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있어도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 제한규정을 삭제함(제1항 단서 삭제)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의 유무, 그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의 배우자 보상금”의 적정 월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2	안 제12조(보상금)	○	—
3	안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가 유족의 범위에 추가되는 경우, 지급 순위의 변동[예: 부모(3순위) 또는 조부모(4순위) → 자녀의 배우자(2순위)]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¹⁾로 인해 보상금 지급총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의 유무, 그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의 배우자 보상금”의 적정 월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 인원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자녀보상금(안 제12조제2항):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 1.4%)
- 6·25전몰군경의 유족보상금(안 제12조제6항): 2020~2024년 6·25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증감률(배우자 △18.0%, 부모 △10.4%, 자녀 1.4%)

1)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 분	월 지급액(천원)
1) 배우자	2,03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361
3) 부모 또는 조부모	2,001

-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안 제12조제7항): 2020~2024년 6·25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증감률(자녀 1.4%)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안 제16조의3제1항):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1.4%)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 단가는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연평균인상률(5.1%)²⁾을 적용하여 추정함
 - 보상금과 자녀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 수준의 보상금(월 3,865천원)과 자녀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인상률 5.1%를 적용
 - －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연평균인상률은 13.9%³⁾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연평균인상률은 5.1%임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⁴⁾에 따른 공로금(1,000만원)을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연평균인상률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상승률
전몰군경 자녀보상금 월 지급액(천원)	1,933	2,030	2,142	2,249	2,361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연평균인상률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상승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지급액(천원)	347	364	439	516	585	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 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녀보상금 지급연령(25세 미만) 폐지(안 제12조제2항 삭제)

□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로서 “2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인원에 자녀보상금을 곱하여 추계

○ (지급대상) 2025년 현재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없는 “2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74,975명)에서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Delta 1.4\%$)을 적용하여 추정

－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에게는 안 제12조제6항에 따라 최고 수준의 보상금(현재 월 3,865천원)이 지급되므로, 동 추계의 인원에서 차감함

○ (지급단가)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별 자녀보상금에 보상금 인상률(5.1%)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여 추정

－ 자녀보상금의 지급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권이 이전(예: 현재 부모보상금 월 2,001천원 → 자녀보상금 월 2,361천원)되어, 보상금 단가 차이로 인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시점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보상금의 지급권이 이전되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조 3,191억 9,800만원으로 추계

[표 2] 자녀보상금 지급연령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몰·순직군경	인원(A, 명) ¹⁾	4,118	3,193	2,269	1,345	423	
	보상금 단가(B, 천원)	2,481	2,608	2,741	2,881	3,028	
	소계 ($C=A \times B \times 12$ 개월 백만원)	122,617	99,919	74,618	46,507	15,362	
상이 1~5급 등	인원(D, 명)	20,165	19,882	19,604	19,330	19,059	
	보상금 단가(E, 천원)	2,155	2,264	2,380	2,501	2,629	
	소계 ($F=D \times E \times 12$ 개월 백만원)	521,350	540,268	559,872	580,187	601,240	
상이 6급 등	인원(G, 명)	18,254	17,998	17,746	17,498	17,253	
	보상금 단가(H, 천원)	983	1,033	1,085	1,141	1,199	
	소계 ($I=G \times H \times 12$ 개월 백만원)	215,253	223,064	231,158	239,546	248,238	
추가재정소요 ($J=C+F+I$, 백만원)		859,220	863,250	865,648	866,240	864,840	4,319,198

주: 1) 전체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인원에서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자녀) 인원을 차감한 인원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게 최고수준의 보상금 지급(안 제12조제6항 신설)

□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의 수에 보상금 차액 또는 최고수준의 보상금을 곱하여 추계

○ (지급대상) 2025년 현재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배우자 1,887명, 부모 83명, 자녀 30,967명)에 선순위 유족 증감률(배우자 △18.0%, 부모 △10.4%, 자녀 1.4%)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보상금의 차액(최고수준의 보상금-현재 수령보상금),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수준의 보상금(상이등급 1급1항, 월 지급액 3,865천원)에 보상금 인상률(5.1%)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여 추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최고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조 8,607억 6,100만원 추계

[표 3]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배우자	인원(A, 명)		1,547	1,269	1,040	853	700	—
	보상금 단가(천원)	現보상금(B)	2,140	2,249	2,364	2,484	2,611	—
		최고수준(C)	4,062	4,269	4,487	4,716	4,956	—
		차액(D=C-B)	1,922	2,020	2,123	2,232	2,345	—
	소계 (E=A×D×12개월, 백만원)		35,692	30,760	26,509	22,845	19,688	—
부모	인원(F, 명)		74	67	60	53	48	—
	보상금 단가(천원)	現보상금(G)	2,103	2,210	2,323	2,442	2,566	—
		최고수준(H)	4,062	4,269	4,487	4,716	4,956	—
		차액(I=H-G)	1959	2059	2164	2274	2390	—
	소계 (J=F×I×12개월, 백만원)		1,748	1,645	1,548	1,457	1,372	—
자녀	인원(K, 명)		31,389	31,817	32,251	32,691	33,137	—
	보상금 단가(L, 천원)		4,062	4,269	4,487	4,716	4,956	—
	소계 (M=K×L×12개월, 백만원)		1,530,081	1,630,044	1,736,536	1,849,987	1,970,849	—
추가재정소요 (O=E+J+M, 백만원)			1,567,521	1,662,448	1,764,594	1,874,289	1,991,909	8,860,761

주: 1) 배우자와 부모는 보상금 수령 인원이며, 자녀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인원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안 제12조제7항 신설)

-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는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자녀의 수에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을 곱하여 추계
 - (지급대상) 2025년 현재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30,967명)에 선순위 유족 증가율(자녀 1.4%)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로금(1,000만원)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13억 7,000만원으로 추계
 -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2026년은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

[표 4] 6·25전몰군경자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6·25전몰군경 선순위 자녀	지급인원(A, 명)	31,389	428	434	440	446	—
	누적인원	31,389	31,817	32,251	32,691	33,137	—
피해 보상금 단가(B, 백만원)		10	10	10	10	10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313,890	4,280	4,340	4,400	4,460	331,37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안 제16조의3제1항 단서 삭제)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6·25전몰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어 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1,565명)에 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곱하여 추계
 - (지급대상) 2025년 현재 6·25전몰군경의 자녀 중 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1,565명)에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1.4%)을 적용하여 추정
 -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6·25전몰군경의 자녀수당 월 지급액(585천원)에

최근 5년 보상금 인상률(5.1%)을 적용하여 추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12억 5,800만원으로 추계

[표 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 (명)	전몰군경(A)	1,468	1,448	1,427	1,407	1,388	—
	순직군경(B)	75	74	73	72	71	—
	소계(C=A+B)	1,543	1,522	1,500	1,479	1,459	—
월 지급단가(D, 천원)		615	647	680	715	751	—
추가재정소요 (E=C×D×12개월, 백만원)		11,388	11,804	12,236	12,683	13,147	61,258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보상금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조 7,520억 1,900만원, 2030년 2조 8,743억 5,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 5,725억 8,700만원(연평균 2조 7,145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폐지	859,220	863,250	865,648	866,240	864,840	4,319,198	863,840
6·25전몰군경유족 최고금액 보상금 지급	1,567,521	1,662,448	1,764,594	1,874,289	1,991,909	8,860,761	1,772,152
6·25전몰군경자녀 장안적 피해 보상금 지급	313,890	4,280	4,340	4,400	4,460	331,370	66,27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11,388	11,804	12,236	12,683	13,147	61,258	12,252
합계	2,752,019	2,541,782	2,646,818	2,757,612	2,874,356	13,572,587	2,714,51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